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1. 부패방지 방침 개요

1.1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목표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으로 윤리경영 실천

1.2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ABMS 목표

부패방지관련 법령 준수 및 뇌물수수·부패행위 금지를 통한 전사적 부패 0건 달성

1.3 부패방지 방침 제공의 목적

임직원에게 부패방지방침과 관련된 행동규범 및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직원 스스로 방침을 준수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관련 기능 및 계층에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목표를 수립, 검토, 달성을 위한 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1.4 부패리스크 발생 상황을 고려한 대처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산업 및 제반 활동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사가 직면할 수 있는 부패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1.5 당사의 부패방지 방침의 적용범위

- 국내외 사업장에 소속된 임직원 (정규직, 비정규직, 자원봉사자 포함)
- 사업관계자(협력업체) : 당사에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업체

1.6 부패방지 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

부패방지 책임자는 부패 및 뇌물수수방지와 관련된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당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슈 해결을 위해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부패 또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나 우려사항이 제기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 및 최고경영자와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접촉하여야 한다.

1.7 지속적인 개선

최고경영자는 당사의 부패리스크를 충분히 다루기 위해 방침 및 목표를 포함하는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 수립, 실행,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간다. 또한 매년 자율준수 의지를 천명하고 부패방지 선포식 또는 기념식을 개최하여 임직원들에게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2. 주요 용어 및 개념

2.1 회사

"회사"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실질적인 지배 및 통제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법인, 사무소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포괄하는 개념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모인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본 방침에 "당사"로 기술한다.

2.2 임직원

"임직원"이란 당사의 임직원을 말하며, 회사의 대표자, 임원, 직원 등 고용형태 및 지위를 불문하고 회사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인원으로 회사의 통제력 하에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 비정규직도 포함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 무보수로 일하는 자도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2.3 이해관계자

결정과 행동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것으로 자신들을 인식하거나 또는 영향을 받거나 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사람(개인, 자연인) 또는 조직을 말한다. 당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관련 이해관계자는 주주, 사업관계자, 정부, 소비자, 당사의 임직원을 말한다.

2.4 사업(business)

"사업"이란 업무형태를 불문하고 매출을 위한 회사의 활동 외에 회사의 일반적인 운영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포괄하며, 상황에 따라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다.

2.5 뇌물수수(증뢰·수뢰)

- "뇌물수수"란 회사가 사업의 획득, 유지 또는 인증 및 허가의 획득 등 이익을 얻거나,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행정조사 및 세금, 벌금의 회피, 행정명령, 규제, 단속에 대한 예외획득 등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하고 적법한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해당 결정에 직·간접적인 권한이 있는 자의 판단 등에 영향을 주기 위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 뇌물 수수자는 민간 기업 혹은 공적 부문에 존재 할 수 있다.
- 상황에 따라 뇌물수수는 다양한 형태로 취해질 수 있다. 부적절한 행동에의 권유나 보수로서 주어지거나 받는 경우, 다음의 것이 뇌물에 해당할 수 있다.

-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②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③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④ 기타 수령자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친절행위」 (개인의 자녀를 통상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시키거나, 공무원이나 고객 가족소유의 기업에 일을 의뢰하는 등)
- ⑤ 기업의 서비스·시설·재산의 무임사용
- ⑥ 정치 헌금 혹은 자선기부

2.6 경제적 이익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같이 일체의 유가물 재산상 이익, 기타 유·무형의 이익 등을 말한다.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2.7 급행료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급금)

- "급행료"는 통상 소정의 필요한 행정조치나 행정절차와 같은 공무원의 일을 확실하게 하거나 촉진하거나 신속하게하기 위한 소액의 비공식적 지급이나 선물로서 종종 현금의 형식을 취한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급금은 편의 지급, 신속 지급, 뇌물 지급 등으로 불리고 있다.
- 비자발급, 취업허가, 통관(세관신고), 전화 설치와 같은 정례적이거나 필수적인 업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발급담당 공무원이나 개인에게 지급하는 비교적 소량의 금액을 말하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뇌물로 취급한다.

2.8 공무원

- 임명이든 선출직이든 관계없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 속한 모든 자를 말하며, 국내 또는 국제를 불문하고, 공적 기관 또는 기구에 포함된 모든 사람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기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 국내 법령상 국내 공무원의 범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령'에 따라 확대될 수 있으며, 해외공무원에 대한 뇌물죄를 규정하는 국내외 법령 상 공무원의 범위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외국정부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의 임직원까지 포괄하여 인정된다.

[참고]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등'이란 형법상 뇌물죄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의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이며, 실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인정되는 교사, 대학병원 임직원 등 사립학교의 임직원 및 기자, 프로듀서 등 언론사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즉, 언론사 임직원에게 사업상의 목적을 위해 경제적 이익을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뇌물죄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2.9 이해충돌(conflict of interest) 또는 이해상충

"이해상충"이란 회사의 업무 담당자가 공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업무가 본인 또는 친인척 등의 사적인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의미한다.

2.10 부정청탁

"부정청탁"이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14가지 대상직무 업무를 처리하도록 청탁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주요 부정청탁행위는 본문에서 규정한다.

3. 임직원의 책무

3.1 부패관련 법령, 부패방지 방침, 부패관련 내부절차(규정)의 준수

당사의 임직원은 부패관련 법령([첨부1] 당사가 준수해야 되는 부패관련 법령 리스트),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관련 내부절차(규정)(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수립[문서번호 : KUP-ABMS-D-01] [별첨3])를 준수하여야 한다.

3.2 근로계약에의 포섭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관련 내부절차(규정)는 정기적인 부패리스크 평가 또는 이슈에 따라
수정되며, 임직원의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4. 부패방지 방침 및 부패관련 내부절차(규정)의 위반

4.1 신고의무

- 방침 및 내부절차(규정)의 위반 행위 또는 위반 시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임직원은 즉시 그
증거(증거가 될 수 있는 모든 문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 및 데이터를 포함함)를 보존하고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이를 당사 홈페이지의 "사이버제보" 또는 사내인트라넷 "메아리"에 신고한다.

- 신고 내용 및 신고 임직원의 이름은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비밀로 유지되며, 당사는 신고 임직원은 해당 신고를 근거로 평가 및 배치에 있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4.2 징계처분

-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방침 및 내부절차(규정)를 위반하거나, 위반을 발견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당사는 인사ABMS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한다.
- 임직원이 그의 부하 직원에게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신의 부하 직원이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당사에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임직원이 인사ABMS규정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당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임직원은 당사로부터 해당 벌금 또는 과태료, 기타 손해를 보전 받을 수 없다.
- 방침 및 내부절차(규정)를 위반한 임직원은 인사ABMS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위법행위로 인한 면직이나 기타 고용의 종료를 포함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4.3 사업관계자와의 계약의 종료

- 당사와 함께 일하는 사업관계자가 부패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들과의 계약관계를 종료시킬 권리를 계약서에 삽입하고, 이를 행사 할 수 있다.
- 임직원은 사업관계자와 거래시 당사의 방침을 충분히 전달하고 부패관련 법령을 지키도록 계약에 반영하여야 하며, 부패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이 되는 경우 조사 권한과 거래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 거래의 성격, 협상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하지 아니할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수 있다.

5. 제반 금지 사항

5.1 원칙적 뇌물 수수(증뢰·수뢰) 금지

-당사의 임직원은 공직자등(외국공무원 포함), 보건의료전문가, 기타의 사업관계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불공정한 사업상의 이득을 획득 유지할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물 등의 뇌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제안·제공을 약속 또는 승인하여서는 안 된다.

5.2 공직자등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경우만 수수를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서도 아니 된다.

-공직자등에게 급행료 지급은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1)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청탁금지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한다.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참고, 공직자별 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 ①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의 상한액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한다.
- ②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의 상한액은 직급별 구분없이 시간당 40만원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강의시간이 1시간이 초과되더라도 최대 1시간 상한액의 150%인 60만원까지만 인정한다.
- ③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의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

- 음식물(식사제공) : 3만원 이하.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를 의미한다.
-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 5만원 이하(화환·조화는 10만원).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허용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 선물 : 5만원 이하(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은 10만원). 다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은 선물에서 제외한다.

3)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은 허용된다.

4) 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불특정 다수인(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 보장)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허용된다.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5.3 보건의료전문가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당사는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에게 공정경쟁규약 제3조 제12항에서 정한 금품류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요양기관등 또는 보건의료전문가의 금품류 제공 요구에 응하여서도 안 된다. 다만 공정경쟁규약 제6조 내지 제16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상관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것은 가능하다.

-건본품(제6조), 기부행위(제7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제8조), 학술대회 참가지원(제9조), 자사제품 설명회(제10조),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제공(제11조), 시장조사(제12조), 시판후조사(제13조), 시판후조사 외의 임상활동(제14조), 전시·광고(제15조), 강연 및 자문(제16조)을 진행하는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5.4 기타 사업관계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기준[문서번호:KUP-ABMS-P-02]'에 준하여 내부 승인권자 또는 한국유나이티드 준법경영실의 허가를 받은 경제적 이익의 제공은 허용한다.
- 금전 : 사업관계자 대표자 또는 업무 담당자 본인 및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따른 축의금·조의금 10만원 이하, 합법적인 수준의 사적 거래에 있어서의 이행채무
- 선물(물품, 회원권, 숙박권, 입장권 및 이에 준하는 것)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5만원 이하의 선물, 누구에게나 허용된 판촉 등에 따른 홍보용품, 기념품
- 음식물(식사) :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의 3만원 이하의 식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사 참석 중 제공되는 식사

5.5 회사 임직원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 당사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 다만,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임직원의 금품 등 수수 기준[문서번호:KUP-ABMS-P-02]'에 따라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기준이 정한 범위 안에서 경조금, 선물, 접대, 편의 수수가 가능하다.

5.6 기부

-당사의 명의로 정치 자금 또는 정치 기부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금 제공은 허용되나 뇌물로 간주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기타 부정한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대가성 기부금'은 금지된다.

5.7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금지

- 당사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된다.
- 부정청탁 행위 유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 ① 인가 허가 등의 업무처리
- ② 행정처분 형벌부과 감경 면제
- ③ 채용 승진 등 인사 개입
- ④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 탈락에 개입
- ⑤ 공공기관 주관 수상 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 ⑥ 입찰 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 ⑦ 특정한 계약 선정 탈락에 개입
- ⑧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 ⑨ 공공기관이 생산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 ⑩ 학교 입학 성적 등 처리 조작
- ⑪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 처리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개입
- ⑬ 행정지도 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 ⑭ 사건의 수사 재판 등 개입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⑮ 1-14번 유형에 대한 지위 권한 남용

- ①~⑭호까지 14가지 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는 행위만 부정청탁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⑮호는 보완적 보충적 지위 권한을 남용하는 행위도 부정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 부정청탁금지 예외 사유]

- ①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른 특정행위 요구
- ②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정책결정이나 업무 수행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건전한 의정활동 보장)
- ④ 법정기한내 업무 처리 요구 등
- ⑤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 ⑥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 ⑦ 기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15가지 부정청탁 중 법질서 전체에 비추어 정당시 되는 경우 예외 인정)

	ABMS	REVISION	01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부패방지 방침	문서번호	KUP-ABMS-D-02

[첨부1] 당사가 준수해야 되는 부패관련 법령 등

연번	부패 관련 법령	소관기관	관련부서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서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서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정거래위원회	전 부서
5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공정거래위원회, 제약바이오협회	전 부서
6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약바이오협회	전 부서
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용노동부	인사팀
8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노동부	인사팀
9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인사팀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전 부서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민권익위원회	전 부서
12	약사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 부서
13	약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	전 부서
1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법무부	해외영업팀, 개발팀